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h6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29 .

발 의 의 원 : 서도원 의원

## 1. 제안이유

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달성군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(조부로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(병무청훈령 제1564호, 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.
2. “예우대상자”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,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5조(홍보 및 예우)**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,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) 군수는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우대)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·입장료·주차료·수강료 등을 감면 해 줄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